의안번호	2219018
의 뢰 인	박대출 의원
회 답 일	2026.6.9.
추계번호	26E267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―혼인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혼인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8년 1,123억원 등 2028~2030년까지 3년간 총 3,370억원(연평균 1,12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

(단위: 억원)

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혼인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92조)	−1,123	−1,123	−1,123	−3,370	−1,123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2조(혼인에 대한 세액공제)	○ 혼인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– (현행) 2024.1.1.~2026.12.31. 동안 혼인신고를 한 경우, 혼인신고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 공제 – (개정안) 2024.1.1.~2029.12.31. 동안 혼인신고를 한 경우, 혼인신고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 공제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92조(혼인에 대한 세액공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개정안에 따라 연장되는 혼인세액공제의 적용기한과 징수기준을 고려하여 2028~2030년을 추계기간으로 설정

○ 개정안은 혼인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하여 2030.12.31.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 공제(생애 1회 한정)

○ 해당 과세연도 귀속분에 대한 세수효과는 연말정산 신고 및 종합소득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는 다음년도에 반영되는 것으로 전제

❑ 향후 추계기간 동안 혼인신고자 수는 2025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

○ 우리나라의 혼인건수는 2012~2022년 동안 매년 감소하다가 2023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등 향후 혼인건수의 변화 추세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2025년 실적을 활용

❑ 향후 추계기간 동안 혼인신고자 대비 혼인세액공제 신청 인원 비중은 2024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

○ 2024년 혼인세액공제 신청 현황은 국세청 제출자료를 활용

❑ 개정안에 따른 행태변화는 고려하지 않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❑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생애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임

- ○ 혼인신고를 한 부부 각각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 적용
- ○ 동 제도는 2024년 세법개정으로 2025년 도입었으며,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2025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부터 적용됨

❑ 동 제도에 대한「조세지출예산서」상의 조세지출 실적은 아직 존재하지 않음

- ○ 이하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혼인세액공제 신청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세수효과 추계

나. 추계방법

❑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혼인세액공제 신청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기준 혼인신고자 대비 혼인세액공제 신청 인원의 비중을 산출하고, 동 비중을 2025년 혼인건수에 적용하여 혼인세액공제 신청인원을 추정한 후 1인당 50만원씩 혼인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계

❑ 2024년 기준 혼인신고자 대비 혼인세액공제 신청 인원의 비중은 46.7%로 나타남

[표 2] 혼인신고 및 혼인세액공제 신청 현황: 2024년 귀속

(단위: 명, %)

혼인신고 건수(A)	혼인세액공제 신청 인원			혼인신고자 대비 비중 [B/(A×2)]
	근로소득자[1]	종합소득자[2]	계(B)	
222.412	118,131	89,786	207,917	46.7%

주: 1)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2025년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자료로, 결정세액이 있는 신청 인원에서 종합소득세 중복 신고인원(21,506명)을 제외한 수치임. 참고로, 혼인세액공제 신청 인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자는 75,689명으로 나타남

2)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2025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에 따른 자료로, 결정세액이 0 이하인 인원(248명)을 제외한 수치임

자료: 국가데이터처, 「인구동향조사」(2025) 및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❑ 2025년 혼인신고자 수에 앞서 산출한 혼인신고자 대비 혼인세액공제 신청 인원 비중을 곱해 향후 추계기간 동안 혼인세액공제 신청인원을 추정하고, 1인당 50만원씩 혼인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수효과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

[표 3] 혼인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

(단위: 명, 억원)

2025년 혼인신고 건수 (A)	혼인세액공제 신청 인원 비중 (B)	혼인세액공제 신청 인원 [C=(A×2)×B]	공제액 (D)	세수효과 (−C×D)
240,326	46.7%	224,664	50만원	−1,123

자료: 국가데이터처, 「인구동향조사」(2025) 및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다. 추계 결과

❑ (귀속기준) 소득 발생연도 기준, 개정안에 따라 혼인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음

○ 2027~2029년 각각 1,123억원의 소득세수 감소가 예상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재정수입 변화(소득 발생연도 기준)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합계	−1,123	−1,123	−1,123	−3,370	−1,123

❑ (징수기준) 소득세 세목별 징수시점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합산하면, 개정안에 따라 혼인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8년 1,123억원 등 2028~2030년까지 3년간 총 3,370억원(연평균 1,12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(징수기준)

(단위: 억원)

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혼인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92조)	−1,123	−1,123	−1,123	−3,370	−1,123

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신홍철	박연서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홍철	02-6788-4745	hongfe@assembly.go.kr